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03조,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 "도서관계", 지적과 "부동산관리계" 등 기구·인력승인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요인과

고용직(지도원) 공무원의 일부정원을 시본청(총무과)에서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구 분	현 행	조 정	증 감	조 정 내 역
	정원수	정원수		
계	909명	913명	4	
시 본 청	381명	383명	2	○ 순증 (5) — 기구신설 · 6급 (2), 7급 (1), 8급 (1), 9급 (1) ○ 인력조정 증가 (1) · 8급 (1), ○ 정원감소 (△4) · 기능 (방호) 10등급 △1 · 지도원 (△3) : 퇴직 (1) 총무과 (2)

사 업 소	54명	55명	1	○ 증 (1) : 지도원 1, ※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
읍 면 동	351명	352명	1	○ 증 (2) ← 총무과에서 · 기능10등급 (사역) 1, · 지도원 1 (금촌1동) ○ 감 (1) → 부동산관리계 · 행 · 농8급 (법원읍)
의 회	19명	19명	0	
직속기관	93명	93명	0	
출 장 소	11명	11명	0	

□ 정원조정내역

○ 본 청 --- 2명 증

- 문화공보담당관실 "도서관계" 신설 --- 4명 (6급1, 7급1, 8급1, 9급1)
- 지적과 "부동산관리계" 신설 --- 1명 (6급1)
- "부동산관리계" 인력보강 --- 1명
 - 법원읍 (행 · 농 8급) 1명 ⇒ 행 · 건 8급으로 직렬조정후 부동산관리계
 - ※ 시분청 주택과 (건축7급) 1명과, 회계과 기능직 1명을 직렬조정하여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에 보강 (시분청내의 이동사항으로 규칙개정사항)
 - ※ 부동산관리계의 정원을 4명으로 조정계획 (6급1, 7급1, 8급1, 기능직1)
- 기타 본청정원 감축 --- 4명
 - 총무과 기능 (방호) 10등급 1명 ⇒ 직렬조정 (사역) 후 금촌2동으로 조정
 - 지도원 정원 감축 (3명)
 - ⇒ 퇴직1, 사업소 1, 금촌1동 1

○ 사 업 소 — 증 1명

○ 공영주차장(1) : 지도원 1

○ 읍·면·동 — 증 1명

○ 감(1) : 법원읍(행·농 8급) ⇒부동산관리계(직렬조정 행·건 8급)

○ 증(2) : 기능(사역)10등급 1, 지도원 1 ⇒ 금촌 1,2동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시본청 정원 "381"을 "383"으로 하고, 제4호중 사업소의 정원 "54"를 "55"로 하며, 제6호중 읍·면·동의 정원 "351"을 "352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	행	개	정	안	비	고
제2조 (정원의 총수) 파주시의 본청 소 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 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	제2조 (정원의 총수) _____ _____ _____.			"도서관계" "부동산관리 계" 지구· 인력승인	
1. 시본청 : 381명		1. 시본청 : 384명				
2. (생 략)		2. (현행과 같음)				
3. (생 략)		3. (현행과 같음)				
4. 사업소 : 54명		4. 사업소 : 55명				
5. (생 략)		5. (현행과 같음)				
6. 읍·면·동 (그 출장소를 포함한 다) : 351명		6. 읍·면·동 (그 출장소를 포함한 다) : 352명				

" 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경기 "

경 기 도

☎ 441-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/ ☎ (0331) 249-4092 / (행) 4092, 2224 조철영

문서번호 자치 12200 - 2770

시행일자 1996. 9. 9. (년)

(경유)

받 음 받는곳 참조

참 조 시정. 총무. 내무과장

제 목 기구·정원 승인

선결	시정	결	지
접	일자 시간	1996 9 9	결
수	번호	5605	재·공
처 리 과			람
담 당 자	이 기 현		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
귀 시(군)에서 승인요청한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보강을 승인하니 빠른시일내에
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정비등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
하기 바랍니다.

덧붙임 : 기구·정원승인서 1부. 끝.

경 기 도 지



받는곳 : 러(구리, 오산, 파주, 이천, 양주, 양평)

기구 · 정원 승인서

기 관 명	직 위	직 급	정 원	비 고
파 주 시 문화공보담당관실	도서관계장	지방사서주사	1명	
		지방사서주사보	1명	
		지방사서서기 또는 지방행정서기	1명	
		지방사서서기보 또는 지방행정서기보	1명	
		계	4명	

※ 기구 · 정원 시행일 : 1996년 9월 5일

— 이 하 여 백 —

“ 장직한 도정 질서는 새경기 ”

경 기 도

우 441-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/ ☎(0331) 249-4093 / (행) 4093, 2224 공제광

문서번호 자치 12200 - 2769
 시행일자 1996. 9. 9. (년)
 (경유)

반 음 받는곳 참조

참 조 (1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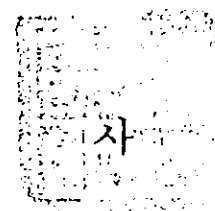
선 결	시 장	영합		지 재	
접	일자 시간	1996	9. 9.	결	부시장
수	번호	2864		재	행정국장
치 리 과				공	총무국장
담 당 자	이재현			람	시정국장

제 목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·정원 승인

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지적기구·인력을 따로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인력은 업무이관 부서의 인력을 자체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덧붙임 : 정원승인서 1부. 끝.

경 기 도 지



받는곳 러

機 構 · 定 員 承 認 書

기 관 명	직 위	직 급	정원	비 고
과 천 시	지 적 과 장	지방지적사무관	1명	
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구 리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남양주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무보직 6급 상계 조정
오 산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시 흥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군 포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의 왕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하 남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용 인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파 주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이 천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양 주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여 주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화 성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광 주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연 천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포 천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가 평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양 평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안 성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김 포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	계		42명	

※ 정원시행일 : 1996년 9월 5일

건축물관리업무의 지적부서이관에 따른 지적기구인력보강

□ 기구·인력보강(안)

- 시·구 : 지적과에 「부동산관리계」 설치
 - 계장요원 6급 1명 신규증원, 실무인력은 자체조정
- 군(출장소) : 토지관리계를 「부동산관리계」로 명칭 개편
 - 실무인력 7급 1명 신규증원, 부족인력은 자체조정

□ 정원조정 지침

- 시·구의 신설되는 「부동산관리계」는 「기구·정원규정(대통령령)」 제5조제3항3호에 의거 최소한 1계3인(계장포함)의 정원책정을 원칙으로 함
- 군으로 건축물관리업무이관에 따른 읍·면의 자체정원 조정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관리 업무량이 많이 환원되는 읍·면이나 지역실정상 행정수요가 적은 읍·면의 인력을 조정
- 시·구본청의 정원은 건설과·주택과등 「건축물관련부서」에서 업무이관과 함께 인력도 조정함을 원칙
- 군(출장소)의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개편함에 따라 부동산관리계장의 직렬을 직무와 부합하게 조정(행정6급 → 행정·지적6급)

□ 행정사항

- 빠른시일내에 정원조정 및 업무이관을 마무리하여 민원처리등 대민불편에 차질없도록 특별한 조치강구
- 9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완료 시행